응 시 원 서

사진부착 (6개월 이내 반명함판)	인적사항	성명	한 글		생년월일	
			한 자			
		현 주 소	(우:)			
		e-Mail		병역사항	필, 면제, 미필	
					기간: -	
		자택전화		휴 대 폰		

학력사항	학 교 명	재 학 기 간	전 공	수학구분	소재지
				졸업/재학/수료/중퇴	
				졸업/재학/수료/중퇴	
				졸업/재학/수료/중퇴	

경력사항	직 장 명	근 무 기 간	근무부서	담당업무	퇴직 사유

자격	자 격		
	자격명	취득일자	발급기관

위 기재사항은 사실과 틀림이 없습니다.

년 월 일

작성자 : (서명)

자 기 소 개 서

성 명 :

년 월 일

작 성 자 :

※ 작성요령은 삭제 후 작성 요망

- 지원 동기, 응시자의 가치관, 장·단점, 전공 분야, 경력, 향후 업무 수행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자유롭게 작성

개인정보 수집 · 이용 동의서

개인정보 수집 · 이용에 대한 동의(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)	
개인정보 수집항목	성명, 생년월일, 전화번호, 학력, 경력, 자격, 면허 등
수집 및 이용목적	기간제 근로자 채용
보유 및 이용기간	- 최종합격자: 근로관계 종료 시 - 예비 합격자: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1개월간 보관 - 불합격자: 채용 서류 반환 기간 종료 후 즉시 폐기

※ 귀하는 이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, 다만 동의를 거부할 경우 이와 관련된 업무 진행에 제약이 따를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.

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함 ☐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지 않음 ☐

민감정보 처리에 대한 동의(개인정보보호법 제23조)	
민감정보 수집항목	임용결격사유 · 범죄경력 · 비위면직 조회 등
수집 및 이용목적	기간제 근로자 채용
보유 및 이용기간	최종합격자: 근로관계 종료 시

※ 귀하는 이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, 다만 동의를 거부할 경우 이와 관련된 업무 진행에 제약이 따를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.

민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함 ☐ 민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지 않음 ☐

고유식별정보 처리에 대한 동의(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)	
고유식별정보 수집항목	주민등록번호 등
수집 및 이용목적	기간제 근로자 채용
보유 및 이용기간	- 최종합격자: 근로관계 종료 시 - 예비 합격자: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1개월간 보관 - 불합격자: 채용 서류 반환 기간 종료 후 즉시 폐기

※ 귀하는 이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, 다만 동의를 거부할 경우 이와 관련된 업무 진행에 제약이 따를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.

고유식별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함 ☐ 고유식별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지 않음 ☐

※ 개인정보 제공자가 동의한 내용 외에 다른 목적으로 활용하지 않으며, 제공된 개인정보의 이용을 거부하고자 할 때에는 개인정보 관리책임자를 통해 열람, 정정, 삭제를 요구할 수 있음.

본인은 개인정보보호법에 의거하여 위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합니다.

2026년 월 일

성명: (서명)

파주시장 귀하

결격사유 부존재 확인서

본인은 파주시 기간제 근로자로 채용됨에 있어 「파주시 공무직·기간제근로자 공정채용 규정」 제23조(채용 결격 사유) 등에 의한 결격사유에 **해당사항이 없음을 확인**하고, 확인 내용이 사실이 아닌 경우에 채용 무효 등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하며, 불이익에 대해 민·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.

「파주시 공무직·기간제근로자 공정채용 규정」 제23조(채용 결격 사유)

§ 제23조(채용 결격사유)

① 채용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채용할 수 없다.

1.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
2. 파산선고를 받은 사람으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
3.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4.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5.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
6.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
7.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「형법」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8.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9.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 파면·해임 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(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후 그 집행유예 기간이 지난 사람을 포함한다)

가.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

나. 「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·청소년대상 성범죄

10. 경력 또는 학력 및 자격증 취득 등을 허위로 작성하여 채용된 사람
11. 징계로 해고 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12. 그밖에 업무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사람

2026년 월 일

성명: (서명)

파주시장 귀하

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 관련 체크리스트(확인서)

「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」상 비위면직자등은 **공공기관에의 취업이 제한**되어(제82조) 이를 위반하여 취업할 경우 **형사처벌**(제89조,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) 및 **해임요구**(제83조)를 받게 되므로, 채용 지원 시 본인이 대상자가 되는지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.

<해당되는 문항 □에 체크>

1. **공직자**로 재직한 경험이 있는지 *공직자: **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 제3호** 「국가공무원법」 및 「지방공무원법」에 따른 공무원과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그 자격 · 임용 · 교육훈련 · 복무 · 보수 · 신분보장 등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인정된 자, 「공직자윤리법」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의 장 및 그 직원	해당 □ 비해당 □
2. **'공직자로서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'**로 적발된 사실이 있는지 (다만, 적발 시기는 재직 중, 퇴직 후 불문) * 부패행위 :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 제4호 가.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나. 공공기관의 예산사용, 공공기관 재산의 취득 · 관리 · 처분 또는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에 있어서 법령에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 다. 가목과 나목에 따른 행위나 그 은폐를 강요, 권고, 제의, 유인하는 행위 * (예시) 성희롱, 성매매, 음주운전, 폭행, 단순업무상 과실, 복무위반, 불성실: 비해당 금품요구, 편의수수, 공금횡령, 공용물 사적사용, 수당 · 여비 부당수령: 해당	해당 □ 비해당 □
3-1. **해당 부패행위**로 **당연퇴직, 파면 또는 해임**된 사실이 있는지	해당 □ 비해당 □
3-2. 위 **퇴직일**(당연퇴직 · 파면 · 해임일)로부터 **5년이 경과되지 않았는지** ⇒ 취업제한대상자 해당(부패방지권익위법 제82조 제1항 제1호)	해당 □ 비해당 □
4-1. 해당 부패행위로 **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 선고**를 받은 사실이 있는지	해당 □ 비해당 □
4-2. 그 형의 **집행이 종료된 날**(또는 집행받지 않기로 확정된 날)부터 **5년이 경과되지 않았는지**(5년 내)	해당 □ 비해당 □
4-3. 권익위법('16.3.29. 제14145호로) 시행('16.9.30.) 이후 퇴직자인지 여부 ⇒ 취업제한대상자 해당(부패방지권익위법 제82조 제1항 제2호, 부칙 제2조)	해당 □ 비해당 □
1, 2, 3-1, 3-2 (모두 충족) ⇒ 취업제한대상자(제82조 제1항 제1호)	해당 □ 비해당 □
1, 2, 4-1, 4-2, 4-3 (모두 충족) ⇒ 취업제한대상자(제82조 제1항 제2호)	해당 □ 비해당 □

※ 해당 기재사항은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자료로만 활용됩니다.

2026년 월 일

성명: (서명)